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국장
람	

제1338호 2018. 2. 20(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1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인천광역시서구청시 제2018-31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2.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A-1 용도) : 획지분할가능선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1	79-2	1,589.6	2	868.8	2획지로 분할	A-1	79-2	1,589.6	2	868.8	2획지로 분할
			3	338.7					3	338.7	
			4	382.1					4	382.1	

※ 획지분할가능선 변경은 지형도면 참조

○ 단독주택용지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79-2	2	획지분할가능선 변경	적정규모 획지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